

심판위원회 규정 관련 질의 답변(대한요트협회)

2021. 6. 8.(화), 대회운영부

□ 질의 개요

- 접수일자: 2021. 6. 8.(화)
- 관련문서: (사)대한요트협회-1361(2021. 6. 4.)호 「현직 지도자의 심판위원회 위원 위촉과 전국규모대회의 경기임원(심판)으로 위촉 가능 여부 문의」

□ 질의 내용 및 답변

-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5970(2019. 7. 26.)호

「심판위원회 규정 준수 여부 및 조치 계획 회신 요청」 관련,

- 1) 대한요트협회 심판위원회 규정을 “현직 지도자를 위원으로 위촉 가능함”으로 개정하고 해당되는 자를 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가능한지?

- 심판위원회 규정 제3조(적용범위) 3항에 따라, 대한체육회 규정과 종목별 규정이 상이할 경우 우리 회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제5조(구성) 2항 4호에 의거 지도자로 재직 중인 사람은 심판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바, 규정 개정과 무관하게 현직 지도자는 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중략)

- ③ 이 규정과 해당 단체의 규정이 상이할 경우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5조(구성) (중략)

-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관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육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4.28., 2019.1.31.>
 2. 동일 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경기인(지도자, 선수 및 심판)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지도자로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6.4.28.>

- 또한 동 조항은 심판위원회 운영 공정성을 위한 핵심 조항으로서, 상위 규정의 내용과 상이하지 않도록 회원종목단체 심판위원회규정을 제/개정해야 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종목별 전국규모대회의 심판으로 현직 지도자를 위촉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5명의 심판 중 2명을 현직 지도자로 위촉)

- 우리 회가 상기 문서를 통해 안내한 “현직 지도자의 종목별 전국규모대회 심판위원장(부장) 및 위원 위촉 금지” 지침은 2018년도 우리 회 국정감사(2018. 10. 23.) 시 지적 받은 시정 요구사항에 따라 종목별 전국규모대회의 판정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 현직 지도자를 각 전국규모대회의 심판 배정 및 운영 관리 등을 수행하는 대회별 심판위원장(부장) 및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판정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종목별 심판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회별 심판위원회 구성 시에도 현직 지도자는 제외해야 합니다.
- 다만 경기인등록규정 상 지도자와 심판의 겸직은 가능하므로, 전국규모대회에 일반심판으로서 배정은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서의 마지막 문구 중 “일반심판” 관련 내용에 대하여 추가 문의하여 받은 이메일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06.09.)

□ 답변

- 요트에서의 경기위원회(경기운영관)는 경기 판정을 좌우하지 않는 대회운영 인력이라고 보이므로, 현직 지도자가 참여/활동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심판위원회의 경우, 항의청문회 등의 분쟁 해결 역할을 하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타종목에서 일반적으로 일컫는 '심판'보다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상위 의사결정체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직 지도자의 경우 심판위원회로 활동치 아니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끝)